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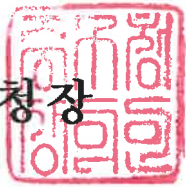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68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의류수거함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거리 미관 유지·개선 등
주민 만족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절약,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적용범위, 구청장 및 관리·운영자,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5조).

나. 설치 기준 및 수거 방법, 규격·재질·색상·형태 등 디자인 마련, 구민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지정, 도로점용허가 등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의무,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65, 팩스 : 02-3396-8752, email : kimsh840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수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제4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의류수거함 설치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의류수거함 관리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설치하려는 장소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에게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